

2000년 11월 11일
 → 박경민,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 이이 - 9889 - 9779
 → e-mail: anna0709@hanvnet.net
 . 김민정...

002년 당 회 / 청소년 안전지대는 있는가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안전지대는 있는가

2000년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안전지대는 있는가

2000년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목 차

- 간담회 순서
- 청소년유해시설 실태와 현황 / 3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실태 / 20
- 지역 사회와 청소년 문화 / 31
- 바람직한 청소년 대안환경 / 37
-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다 / 44

간담회 순서

사 회 : 이 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 청소년유해시설 실태와 현황

권 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발제2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실태

강 민아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간사)

발제3 : 지역 사회와 청소년 문화

김 찬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발제4 : 바람직한 청소년 대안환경

이 민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발제5 :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다

남 효 (전교조 학생생활국 학생사업부장)

질의 및 응답

청소년유해시설 실태와 현황

권 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I. 청소년유해시설과 청소년문제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스스로의 문제에도 기인하지만 대부분 가정, 학교, 사회의 연결고리가 절연된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이나 학교의 청소년보호기능이 약화되어 내모는 요인(push factors)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사회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이끄는 요인(pull factors)이 점점하면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급증하면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므로 적극적 예방노력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이 유해시설에 출입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3가지 요인(개인적 요인, 유해업소적 요인, 사회강화적 요인)에 의하며 특히 유해업소적 요인은 청소년들을 아무리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더라도 이들이 보고 인식하는 주변환경이 유해적 요인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문제를 사회가 조장하는 차원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이 유익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함은 청소년들이 남은 시간 여가생활을 즐기고 다음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그러나 가정 및 학교환경 주변에서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하는 각종 유해업소의 등장과 청소년이용업소로 분류된 시설도 탈법과 비행을 조장하는 각종 시설로 변질되면서 청소년들의 유익환경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그동안 청소년유해시설의 단속·처벌, 정비와 같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유익환경을 조성하려는 많은 시책과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이들을 위협하는 환경의 유해성은 곳곳에서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시설은 무엇이며 시설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고 그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청소년유해시설의 정의

1. 청소년유해시설

청소년 유해시설은 주로 유해업소를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청소년보호법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규정된 청소년유해업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규정

- ①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유흥주점, 단란주점
- ②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노래연습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청소년출입허용시설의 출입허용·밤 10시 이후, 오전 9시이전 금지, 고용금지)
- ③ 체육시설의 설정·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도학원, 부도장
-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사행행위업소
- ⑤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거나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 ⑥ 청소년유해매체, 약물 및 물건을 제작, 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영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고시한 것 : 성적 접대행위영업, 유흥접객행위영업, 성인매체물유통영업, 청소년의 심신발달장애유발가능성 영업

*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의 규정

-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휴게음식점(다방의 영업장을 벗어난 판매·배달행위로 대가수수·조장·목인행위), 일반음식점(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방, 카페 등)
- ②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숙박업, 이용업(타법령에 의거 고용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은 예외), 안마실개설설치 목욕장(사우나탕, 증기탕)
- ③ 음비게임법 :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 ④ 담배사업법 : 소매업

- 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제조업·판매업
- ⑥ 회비 등을 받거나 유로로 만화를 대여하는 업 : 만화대여업
- ⑦ 청소년유해매체, 약물 및 물건을 제작, 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영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고시한 것 : 고용청소년의 심신발달장애유발가능성, 고용청소년의 유해한 근로행위 영업

2. 주요 청소년유해업소의 관련 법령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시설의 법적 관리를 보면 <표1>과 같이 구분된다.

<표1> 청소년유해업소의 관리와 적용을 받은 법

구분	업소명	관련법률
출입 고용 금지업소	유흥주점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등)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31조 등)
	단란주점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등)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31조)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제24조) 청소년이용시설 갖춘 장소 (노래연습장) 예외출입 ○ 음비법 8조3호(출입시간제한)
고용 금지업소	일반음식점 ¹⁾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 카페 등)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등)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31조)
	휴게음식점(다방)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제24조, 제26조의2 등)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제31조)
	숙박업소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6조의2 등)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3조)
	게임제공업 ²⁾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 음비법 8조3호(출입시간제한)

¹⁾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방 등) 중 주로 주류를 많이 판매하는 업종의 청소년출입금지에 대한 연구필요

²⁾ 음비법 개정(안)에서는 게임제공업의 분류를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으로 분류

III. 청소년유해시설의 현황과 주요 대책

1. 청소년유해시설의 현황과 문제

'99년 3월 이후 전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심야영업 전면해제 이후 음주·향락풍조의 확산과 손님유치를 위한 업소간 과당경쟁으로 퇴폐·변태업소가 확산되었고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이용하는 시설이나 시설의 유해성은 <표2,3,4>에서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해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중고생의 업소이용실태(단위 : %)

장소	중학생(716명)	고등학생(666명)
전자오락실	72.9	78.5
만화대본소	64.5	74.9
디스코클럽	6.8	13.1
심야다방	7.7	11.4
당구장	13.4	23.1
심야극장	8.9	13.2
사격장	30.6	30.0
술집	8.4	23.4

* 전자오락실, 만화대본소 등의 이용율이 매우 높고 그 다음 사격장, 당구장, 술집의 이용도 상당수에 이룸

자료 : 대한YWCA연합회(1987)

<표3>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와 환경의 유해성 평가

시설 및 장소	이용률	유해도
공원	80.0	4.6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	22.9	56.8
전자오락실	64.1	49.1
성인오락실	6.7	86.2
당구장	17.4	68.4
롤러스케이팅장	59.0	22.3
디스코장	18.4	66.8
성인디스코장	12.6	81.0
퇴폐이발소	4.0	89.3
경양식점	71.0	12.7
카페(술도 파는 곳)	32.0	55.8
일일차점	27.5	32.9
DJ커피숍	31.5	31.7
포장마차	39.8	25.5
음악감상실	34.7	6.5
만화가게	56.6	39.4
심야만화가게	10.0	84.1
사설독서실	26.4	15.8
제과점	91.1	2.2
분식점	92.5	5.2
패스트푸드점	69.8	8.2
비디오가게	50.6	41.4
임시 및 각종학원	61.6	9.2
음란출판물을 파는 노점상	9.5	88.4
문방구	97.1	2.5
사창가	7.8	82.9
유흥가	15.1	84.7
소극장	62.1	30.5

*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중 카페(술도 파는 곳), 비디오가게의 이용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자료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표4> 청소년의 업소출입에 대한 태도

업소	부정적	모르겠다	긍정적	계
만화방	56.0	25.2	18.8	100.0
전자오락실	54.2	16.7	29.1	100.0
PC방	47.8	16.1	36.1	100.0
당구장	56.7	26.1	17.2	100.0
노래방	44.7	14.7	40.5	100.0
비디오방	59.8	30.3	9.9	100.0
커피숍	54.7	26.7	18.6	100.0
카페	55.3	32.9	11.8	100.0
락카페	57.9	33.8	8.1	100.0
클라텍	49.5	26.6	23.9	100.0
호프집·소주방	66.9	25.1	8.1	100.0
디스코텍	64.2	29.1	6.7	100.0
단란주점	73.1	23.3	3.5	100.0
티켓다방	73.8	23.2	3.0	100.0
여관·모텔	73.6	22.1	4.4	100.0

* 청소년들이 노래방, PC방, 클라텍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었음.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1999.

전반적으로 청소년유해시설로 규정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큰 변화없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의 시설에서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은 유해하다는 인식이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어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유해업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유해시설의 현황을 보면 <표5>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시설이 큰 폭의 변화없이 청소년의 생활여건을 위협하는 시설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청소년유해업소의 변화 추이

연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특수 목욕탕	노래 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이용업	숙박업	만화 대여점
98. 1	16,867	23,123	453	25,333	2,969	29,917	22,725	9,014
98. 6	16,725	23,564	372	26,905	2,981	27,453	30,840	9,339
98. 12	17,370	24,550	400	27,162	2,915	31,140	32,067	9,878
99. 6	17,991	23,632	-	-	-	31,553	31,243	-
2000.3	20,390	22,080	-	-	-	31,542	31,683	-
2000.7	19,918	21,827	-	30,441	2,727	36,625	31,853	-

그리고 자치단체별 청소년유해업소는 다양한 시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세분류하면 <표6>과 같다.

<표6> 전국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성인업소 총괄현황(2000.7.말 현재)

구분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다방	무도학원	무도장	이용업	숙박업	노래방	비디오방	종합게임장
계	735,427	20,918	21,827	537,318	52,305	1,242	107	36,625	31,853	30,441	2,727	64
서울시	150,825	1,957	5,884	111,283	13,436	235	14	6,729	4,565	5,841	865	16
부산시	50,082	1,532	2,948	33,926	2,881	70	10	3,377	2,672	2,488	174	4
대구시	35,927	932	293	26,947	2,587	172	1	1,678	1,304	1,874	135	4
인천시	38,027	895	944	28,016	3,222	51	44	1,669	1,526	1,547	107	6
대전시	24,956	493	569	18,675	1,699	41	2	1,556	960	874	87	-
광주시	19,497	486	521	14,119	1,257	73	-	983	899	1,041	117	1
울산시	16,511	776	633	11,600	998	35	-	725	711	1,000	32	1
경기	123,424	3,628	2,669	95,443	5,731	213	14	5,175	4,743	5,371	427	10
강원	36,669	1,283	1,075	27,622	1,979	22	2	1,018	2,393	1,178	93	4
충북	27,284	575	492	21,112	2,000	30	-	1,034	1,147	810	83	1
충남	31,510	524	782	22,928	2,503	32	-	1,449	1,977	1,228	85	2
전북	29,676	1,066	580	21,608	2,118	28	2	1,396	1,481	1,249	148	-
전남	38,746	1,385	860	24,755	3,055	32	2	5,287	1,832	1,401	132	5
경북	48,804	1,905	963	35,098	4,137	70	13	1,964	2,533	2,006	110	5
경남	52,503	2,992	1,591	36,589	4,247	102	2	2,170	2,444	2,247	114	5
제주	10,986	489	1,023	7,597	455	36	1	415	666	286	18	-

* 서울시는 2000.6월말 현재 실적임.

특히 청소년유해업소 735,427개 가운데 많은 업소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거나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금지조항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기도 한 실정이다.

<표7> 1999년도에 검찰 직접 단속시 미성년자 고용으로 적발된 업종별 현황

구분	구속		불구속		계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백분율
일반음식점	33	28.0%	85	72.0%	118	3.9%
티켓다방	53	22.1%	187	77.9%	240	7.9%
단란주점	312	32.9%	639	67.1%	951	31.4%
유흥주점	168	41.0%	242	59.0%	410	13.5%
윤락업소	103	39.0%	161	61.0%	264	8.7%
성인용품점	10	55.6%	8	44.4%	18	0.6%
노래방	31	16.4%	159	83.6%	190	6.3%
비디오방	1	12.5%	7	87.5%	8	0.3%
보도사무실	154	53.3%	135	46.7%	289	9.5%
신종윤락매체	93	26.9%	253	73.1%	346	11.4%
기타	45	23.0%	151	77.0%	196	6.5%
계	1,003	33.1%	2,027	66.9%	3,030	100%

자료 : 대검찰청, 1999.

또한 <표8.9>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이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인 노래연습장, 만화방에서도 변태영업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8> 노래연습장, 만화방의 위반유형

위반유형별 업종·연도별	계	시간외 영업	음란퇴폐	변태영업	무허가	미성년자 상대영업	기타	
노래방	'97	14,607	2,556	44	1,573	1,254	3,889	5,291
	'98	24,911	6,689	28	3,526	2,472	4,754	7,442
	'99	14,059	909	40	2,901	2,276	3,492	4,441
만화방	'97	1,658	141	92	73	311	138	903
	'98	2,645	295	7	29	1,363	278	673
	'99	705	122	1	16	419	19	128

자료 : 경찰청, 2000.

<표9>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의 영업시간 폐지 후 청소년탈선현황

위반내용	'98년도	'99년도		2000년 7월말 현재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계	62,080	57,895	△4,185(△6.7%)	18,027	△38,868(△68.9%)
청소년고용	2,520	3,734	1,214(48.2%)	2,903	△831(△22.2%)
청소년출입	6,345	5,235	△1,110(△17.5%)	4,232	△1,003(△19.1%)
유해매체물 관련위반	4,010	1,488	△2,522(△62.9%)	294	△1,194(△80.2%)
술·담배 판매	13,136	14,714	1,578(12.0%)	7,243	△7,471(△50.8%)
기타	36,069	32,724	△3,345(△9.3%)	3,355	△29,369(△89.7%)

자료 : 경찰청, 2000.10.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유해환경과 시설의 지속적 단속과 지도를 통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출입, 유해매체관련 위반과 같은 불법영업행위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청소년고용, 청소년에 술·담배판매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불법영업행위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유해환경이 급격히 확산됨은 궁극적으로 퇴폐향락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결합되어 성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이후에 매춘여성이 50만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청소년이 2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 사례나 유해업소 여종업원의 46%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유흥업소의 청소년유해성의 극단적 측면을 야기시키고 있고 더불어 청소년불법고용의 적발건수도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표10>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이후 청소년불법고용 적발건수

'98년도	'99년도		2000년 7월말 현재
	허용이전	허용이후('99.3.1)	
2,520	567	3,167	2,903

자료 : 경찰청, 2000.10.

2.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대책 주요 사업

(1)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지방단위 청소년보호사업의 추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대책협의회'(830개반, 4,285명)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표11>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 현황 (2000.3.말 현재)

구분	조직(개반/명)	회의개최실적	비고
서울시	9(32/186)	6	17개 구청은 미구성
부산시	17(76/326)	13	
대구시	9(35/62)	4	
인천시	9(31/92)	2	
광주시	6(28/53)	2	
대전시	6(30/61)	-	
울산시	6(23/64)	-	
경기	24(46/330)	8	
강원	19(72/253)	4	
충북	13(52/233)	9	
충남	17(53/335)	8	
전북	15(35/191)	4	
전남	23(56/375)	13	
경북	24(92/389)	19	
경남	21(83/289)	11	
제주	5(21/129)	1	
계	248(830/4,285)	104	

(2)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대상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음식점중앙회,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휴게시설업중앙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영업자 97,88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특별교육('00.1~'00.6)을 실시하였다.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민간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의 근절과 유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구성·운영(청소년 보호법 제43조에 근거)중에 있다.

<표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구분	합계	학교	시민단체
서울	433(9,712)	364(5,032)	69(4,680)
부산	53(1,237)	35(389)	18(848)
대구	20(475)	10(184)	10(291)
인천	9(401)	2(18)	7(383)
광주	13(524)	3(52)	10(472)
대전	21(422)	16(140)	5(282)
울산	47(845)	41(413)	6(432)
경기	34(1,592)	8(120)	26(1,472)
강원	29(916)	18(291)	11(625)
충북	50(1,181)	45(816)	5(365)
충남	48(1,343)	36(600)	12(743)
전북	51(1,366)	40(738)	11(628)
전남	38(950)	24(329)	14(621)
경북	61(897)	49(563)	12(334)
경남	59(1,553)	47(797)	12(756)
제주	10(372)	3(48)	7(324)
계	976(23,786)	741(10,530)	235(13,256)

(4)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지정하도록 의무화('99.7)하여 2000년 1월 현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45개 지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15개 지역 운영중에 있다.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 금지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하는 경우 설치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과 현실성 부재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 절대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 상대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m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 전국 지역 교육청에서는 관계공무원, 지역유지, 학부모 등 9~15명으로 구성·운영

(6) 청소년 관련 탈·불법행위 업소에 one strike out 시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을 유혹接客원으로 고용하여 유혹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벌칙을 강화하였다.

- 6개월간 동일장소 동종영업 허가금지 ⇒ 1년간 동일장소 모든 식품接客업 허가금지
- 1년간 동일인 동종영업허가금지 ⇒ 2년간 동일인 모든 식품接客업허가금지
- * 청소년을 유혹接客원으로 고용하여 유혹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신설)
- 1차 위반 : 허가취소(영업소폐쇄-one strike out)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행위
- 1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청소년고용·출입,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제외

o one strike out 제도도입이후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 등 불법,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이행 (서울시)

- 1999년 : 36건(유혹주점 1, 단란주점 32, 소주방등 3)
- 2000년 : 219건(유혹주점 43, 단란주점 130, 소주방등 46)

o 허가취소된 동일장소 유사업종 신규허가 제한(서울시)

- 1999년 : 261건(유혹주점 3, 단란주점 124, 소주방등 134)
- 2000년 : 230건(유혹주점 11, 단란주점 99, 소주방등 120)

(7) 탈·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청소년유해시설의 정비, 점검, 단속은 행정자치부, 교육부,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각 부처가 관련법률에 근거해 담당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불법 청소년 고용, 미성년자 출입, 퇴·변태행위, 술·담배판매, 청소년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 실시
- 대검찰청은 미성년자 고용, 미성년자윤락알선, 미성년자윤락상대방 등에 대한 단속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 출입, 청소년 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청소년유해시설의 탈법·불법의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의 단속 실적은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22% 감소('99 : 70,719건→'00 : 55,187건)하고 있지만 시간외 영업으로 인한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3>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위 : 건수, 기준 : '99.'00. 9월말)

구분	계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	아용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무도장	기타	
계	2000 (%)	55187 (-22.0)	3234	3547	14878	3119	1653	1231	10922	6197	861	9545
	'99	70719	4499	7271	20208	2833	2161	1123	7141	10206	889	14388
시간외 영업	2000 (%)	4887 (+27.8)	212	0	0	0	0	0	4324	322	19	10
	'99	3824	381	438	13	0	0	65	1947	765	23	192
음란 퇴폐	2000 (%)	2494 (-1.9)	497	128	105	84	600	338	4	19	0	719
	'99	2542	449	129	127	86	643	190	14	35	0	869
변태 영업	2000 (%)	6298 (-31.1)	55	1493	1908	524	49	43	364	1702	70	90
	'99	9137	296	2666	2787	557	60	54	113	1990	118	496
무허가 영업	2000 (%)	11251 (-31.1)	530	810	5087	138	33	23	1488	609	670	1863
	'99	16327	1154	1916	6675	217	72	92	1055	1722	498	2876
미성년자상대 영업	2000 (%)	16357 (-3.9)	971	852	6692	1412	597	4	1853	1290	0	2686
	'99	17025	973	1308	7840	560	332	2	1224	2523	2	2261
기타	2000 (%)	13900 (-36.4)	969	264	1086	961	374	823	2889	2255	102	4177
	'99	21864	1246	814	2766	1413	1054	720	2788	3121	248	7694

(경찰청 내부자료)

그리고 청소년 유해사범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중에 있다.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97년부터 전국의 시민단체 및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도 확대 운영 (전국 972개 23,626명 활동중)
- 민간감시활동과 행정기관(경찰, 자치단체 등)의 유해환경 단속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 시행중
- 각 지역별 자치단체, 검찰,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98. 7. 20~)의 구성·운영으로 청소년유해시설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 청소년보호법 발효이후 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과 고용의 실태가 상당수에 이르고 청소년 대상 위해 행위가 빈번함

<표14>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건수, 기준 : 2000. 1.1 - 7. 30)

구분	시도	총계	위반내용(건수)											조치		
			유해업소					청소년이용유해행위						계	구속	불구속
			소계	청소년출입	청소년고용	청년고용	유해매체물	유해약물(술·담배)	성적패행위	가혹행위	호객행위	풍기문장소제	대가성적교제			
총계	18,027	9,170	4,232	2,903	2,035	294	7,434 (7,434)	1,129	311	2	65	521	230	18,027	703	17324
서울	4,411	2,091	1,045	792	254	114	1,848 (1,797)	358	100	1	40	81	136	4,411	246	4,165
부산	1,637	778	286	196	296	20	760 (759)	79	23	-	17	32	7	1,637	62	1,575
대구	624	310	176	55	79	3	286 (269)	25	3	1	2	7	12	624	14	610
인천	1,032	423	219	109	95	4	525 (522)	80	19	-	-	27	34	1,032	101	931
울산	279	79	35	43	1	11	177 (174)	12	3	-	-	7	2	279	25	254
경기	2,254	1,084	699	306	79	53	1,067 (1,047)	50	16	-	-	29	5	2,254	71	2,183
강원	874	419	248	144	27	6	413 (378)	36	27	-	3	5	1	874	50	824
충북	358	136	54	77	5	1	185 (178)	36	29	-	-	7	-	358	13	345
충남	1,851	1,204	505	280	419	19	503 (491)	125	66	-	-	49	10	1,851	29	1,822
전북	419	150	85	61	4	-	247 (241)	22	-	-	-	21	1	419	7	412
전남	1,108	654	212	301	141	28	342 (334)	84	23	-	-	57	4	1,108	48	1,060
경북	1,147	629	274	328	27	4	366 (363)	148	1	-	-	146	1	1,147	14	1,133
경남	1,814	1,166	382	195	589	30	551 (527)	67	1	-	3	52	11	1,814	17	1,797
제주	219	47	12	16	19	1	164 (163)	7	-	-	-	1	6	219	6	213

(자료출처,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과징금부과규정(미 징수자 가산금 부과규정 포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지방자치단체 위임전 '97. 7 ~ '99. 6 징수실적 23.1%).
-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가 '99. 7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후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14.6%)함

IV. 유해시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청소년비행이 증가하면서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이 매우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연구는 많지 않은데 그 원인은 유해환경에 대한 영향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거나 순간적으로 또는 많은 시간이 흘러 그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는 연계성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유해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은 그 정도에 따라 청소년건전성장의 저해, 피해, 비행화의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건전성장의 저해란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지만 청소년의 성적·폭력적·범죄적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고 피해란 청소년의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정서 및 신체상의 손상을 주는 것으로서 이는 법적 규제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비행화란 유해환경이 청소년의 탈선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유발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성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단계를 의미한다(주희중, 1998:12 재인용).

유해업소가 생활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은 출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소년들에게 출입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동기를 자극할 수 있고 유해업소에 대한 근접성과 위험의 노출을 증가시켜 규범의식을 약화시키거나 각종 일탈행동을 촉발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순간적 쾌락을 맛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탈규범적 행위나 비행행위에 대한 친화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김문조, 1997).

물론 유해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다양한 영향은 각종 시설이 주는 환경적 유해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특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노래연습장

<표15> 노래연습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저렴 ○ 자기만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음 ○ 대중적이며 친밀하게 다가가갈 수 있는 대중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화공간 - 다함께 노래하는 공동체 조건 ○ 스트레스 해소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에게 마음껏 소리지를 수 있는 공간제공 - 욕구분출장소가 됨으로써 망랑하고 친구사이의 친밀 경험 ○ 타인과의 만남과 관계개선의 장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교를 위한 대중적 오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탈선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과 출입하면서 성적 탈선 - 음주 흡연장소 ○ 선정적 비디오방출로 우발적 범죄유발 우려 ○ 밀폐된 공간내에서의 중동적 범죄와 탈선의 장소로 변질 ○ 밀폐된 공간에 흡연 등 실내환경의 환기부족으로 건강상의 문제

(2) 비디오감상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서울소재 비디오물감상실 50개소, 고교생 600명, 성인 1,1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99.3.2-4.30)에 의하면 청소년의 출입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출입, 술·담배의 구입이 가능하였고 청소년의 63.2%, 성인의 85.4%가 성적인 접촉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45.6%가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성인의 41.3%가 유익하다는 응답을 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시설은 구조적으로 폐쇄적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소수만이 잔존하면서 실질적인 비행과 성적 접촉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장소이다.

(3) PC게임방

PC방은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금지(오후 10:00-익일 9:00)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를 방관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와 모방흡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채팅을 통한 불건전한 만남으로 청소년의 탈선문제(원조교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유해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표16>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표16>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에 제기되는 영향

구분	주요 문제점
PC방, 게임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역량강화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부정적 효과도 큼 ○ 청소년출입금지시간(밤10에서 다음날 오전 9시)에 청소년의 출입관리 불철저 ○ PC방, 게임장의 흡연으로 위생불결 ○ 음란물 접촉에 노출 ○ 번개식 채팅으로 원조교제, 성폭행가능성 존재 ○ 게임중독으로 학업에 지장이 큼
비디오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출입금지시설에 청소년의 출입관리 불철저 ○ 시설관리문제(유리창, 조도, 의자, 소화기, 잠금장치설치 등)관리불철저 ○ 풍속위해 행위 발생 ○ 안전점검, 위생점검 등 미흡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이외의 불법 탈법영업행위 심화 ○ 흡연 및 주류판매 ○ 미성년자 여성접대부 고용 ○ 선정적 영상사용 보편화 ○ 같은 업소내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겸업 증가 ○ 청소년전용실의 규정이행 불철저
소주·호프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점객업 미세분화로 일반음식점 영업(업종세분화 곤란)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지정요망 ○ 일반음식점의 주류취금금지 규제곤란으로 음주행위근절 불가 ○ 업소와 단속공무원의 유착근절의 실효성 미흡 ○ 담배 및 주류판매 일상화 ○ 일부의 퇴폐적 유흥주점영업 ○ 비끼를 고용한 호객행위로 청소년의 집단모임장소 제공
유흥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 고용 및 변태영업 ○ 청소년의 불법업소출입 묵인 ○ 미성년자 고용알선행위 ○ 단속공무원의 불법 묵인
숙박업소 (무인자동숙박업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주거지역 건립으로 환경악영향 ○ 건축허가 관련 규제수단 미비 ○ 유해건축물 건축에 대한 자치단체장 규제권 없음 ○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역 없음 ○ 학교정화구역내의 상업지역에 대한 숙박업 건축허가 금지제도화 미비 ○ 청소년의 혼숙 원조교제와 주류판매 가능성 상존
화상전화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퇴폐의 가능성이 큼(현행 법률적 단속근거 미흡)

V. 결론

청소년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청소년의 이용 및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욕구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부재하고 그릇된 음주·향락문화적 인식행태는 궁극적으로 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출청소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처가 되고 일반 청소년을 유혹하는 소비처가 되어 유해업소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일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심야출입제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간대에 청소년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흡연 및 변태영업 등으로 청소년의 정신 및 육체건강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유해업소의 청소년불법고용을 통한 퇴폐·변태영업(유흥접객원 고용 등)이나 각종 불법행위의 자행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유해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과 탈선조장과 같은 불법행위의 근절은 제도적 문제이기 앞서 단속의 실효성 미흡, 업주와 소비자의 의식구조 개선의 선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청소년유해업소는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곤란한 신종업종(화상전화방, 무인숙박업소, 성인용품점 등)이 나타나는 등 제도와 대책이 유해시설과 업소의 청소년유해성 방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청소년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이들 시설의 불법·탈법 방지를 위해 각 부처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의 정비,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등 각종 시책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유해업소출입과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행위 잔존하고 있기에 적극적 대책방안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노동, 교육, 산업 등 모든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각급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민간 및 시민들의 적극적 노력을 통한 종합적인 청소년보호노력이 시급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2000).
 김문조(1997),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노혁·길은배(1998),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대검찰청(2000)
 대한YWCA(1987), 청소년의 생활 및 여가실태조사.
 서울YMCA(1989), 향락문화의 실태와 대책.
 심영희 외(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여성특별위원회.
 주희종(1998), 청소년유해업소의 개념 및 분류,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1999),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제 1차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정책포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실태

1. 조사목적

청소년 유해업소는 ①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와 ②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다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 업소의 경우, 동 시설에 한해 청소년 출입은 허용, 고용은 금지), 전화방, 사행행위영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제시된 업소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의 업소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의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구역으로서 유희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유해구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제정 및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설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주변 지역에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즐겨 출입하는 업소가 혼재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주변의 청소년 출입업소를 대상으로 준법성, 실내환경 등 실태를 조사하였다.

2. 조사기간

2000년 10월 ~ 11월

3. 조사대상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업소 250곳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강동구 천호동 천호 4거리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업소
- 영등포구 신세계백화점 뒤편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업소
- 영등포구 영등포역 옆 골목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업소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영등포구 신길 1동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업소
- 영등포구 신길 3동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업소
- 강서구 화곡동 화곡전신전화국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 출입업소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오락실	16	4	4	1	4	29
노래방	25	9	7	13	10	64
커피전문점	28	4	2	3	10	47
PC방	20	10	9	3	6	48
비디오대여점	2	5	1	0	1	9
인쇄매체업	8	7	6	1	3	25
편의점	5	7	0	5	3	20
음반판매업	4	2	0	0	2	8
계	108	48	29	26	39	250

4. 조사방법

조사표에 의거하여 2인 1조로 조를 편성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을 감추고 주간과 심야에 관찰 조사하다.

5. 조사내용

준법성 :

청소년 고용여부, 주류 및 담배 판매여부, 청소년 출입여부,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여부

시설 :

조명, 환기, 소방시설

6. 조사 결과

1) 시설 및 준법성

(1) 소방시설

소화기와 비상구 유무, 비상구 개폐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30개 업소 가운데 193개(83.9%) 업소는 소방시설을 잘 구비해 놓고 있는 반면 37개(16.1%) 업소는 소방시설을 구비해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화재사건이후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비교적 소방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나 비상구의 경우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소방시설

단위 : 사례수(%)

구분	오락실	노래방	커피전문점	PC방	비디오대여점	인쇄매체업	음반판매업	계
양호	26(89.7)	58(90.6)	43(91.5)	38(79.2)	4(44.4)	19(76.0)	5(62.5)	193(83.9)
불량	3(10.3)	6(9.4)	4(8.5)	10(20.8)	5(55.6)	6(24.0)	3(37.5)	37(16.1)
계	29(100.0)	64(100.0)	47(100.0)	48(100.0)	9(100.0)	25(100.0)	8(100.0)	230(100.0)

(2) 환기상태

환풍기 또는 공기 청정기 유무, 공기 청정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50개 업소 가운데 68개(27.2%) 업소는 환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환풍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7개(70.8%) 업소의 경우 환기시설은 있으나 면적에 비해 부족하거나 사용 불량으로 공기가 나쁜 업소로 조사되었다. 환기시설도 불량하고 공기 상태도 좋지 못한 업소는 5개(2.0%) 업소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소가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흡연으로 인하여 공기가 매캐한 상태이므로 182개(72.8%) 업소는 환기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표2> 환기상태

단위 : 사례수(%)

구분	오락실	노래방	커피전문점	PC방	비디오대여점	인쇄매체업	편의점	음반판매업	계
상	5(17.2)	17(26.6)	14(29.8)	16(33.3)	1(11.1)	5(20.0)	8(40.0)	2(25.0)	68(27.2)
중	24(82.8)	45(70.3)	32(68.1)	30(62.5)	8(88.9)	20(80.0)	12(60.0)	6(75.0)	177(70.8)
하		2(3.1)	1(2.1)	2(4.2)					5(2.0)
계	29(100.0)	64(100.0)	47(100.0)	48(100.0)	9(100.0)	25(100.0)	20(100.0)	8(100.0)	250(100.0)

(3) 조명상태

업소의 특성에 따라 밝기의 정도가 다르므로 업소마다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정확한 측정기를 통한 조사가 아닌 조사자의 관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250개 업소 가운데 118개(47.2%) 업소의 경우 조명의 밝기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9개(51.6%) 업소의 경우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 상태가 매우 불량한 업소는 3개(1.2%)업소에 불과했다.

<표3> 조명상태

단위 : 사례수(%)

구분	오락실	노래방	커피전문점	PC방	비디오대여점	인쇄매체업	편의점	음반판매업	계
상	10(34.5)	22(34.4)	20(42.6)	17(35.4)	8(88.9)	18(72.0)	16(80.0)	7(87.5)	118(47.2)
중	19(65.5)	42(65.6)	26(55.3)	30(62.5)	1(11.1)	7(28.0)	3(15.0)	1(12.5)	129(51.6)
하			1(2.1)	1(2.1)			1(5.0)		3(1.2)
계	29(100.0)	64(100.0)	47(100.0)	48(100.0)	9(100.0)	25(100.0)	20(100.0)	8(100.0)	250(100.0)

(4) 청소년 고용여부

청소년 고용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22개 업소 가운데 4개(1.8%)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는 노래방 3개 업소와 커피 전문점 1개 업소로 특히 노래방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에 해당되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청소년 고용여부

단위 : 사례수(%)

구분	오락실	노래방	커피전문점	PC방	비디오대여점	인쇄매체업	계
고용하고 있다		3(4.7)	1(2.1)				4(1.8)
고용하지 않는다	29(100.0)	61(95.3)	46(97.9)	48(100.0)	9(100.0)	25(100.0)	218(98.2)
계	29(100.0)	64(100.0)	47(100.0)	48(100.0)	9(100.0)	25(10.0)	222(100.0)

(5)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7개(40.4%) 업소가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9개(59.6%) 업소가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소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부착하거나 너무 작은 크기로 부착하고 있어 홍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별로는 인쇄매체업소가 안내문 부착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단위 : 사례수(%)

구분	오락실	노래방	PC방	인쇄매체업	계
부착하고 있다	18(62.1)	37(57.8)	24(50.0)	20(80.0)	99(59.6)
부착하지 않고 있다	11(37.9)	27(42.2)	24(50.0)	5(20.0)	67(40.4)
계	29(100.0)	64(100.0)	48(100.0)	25(100.0)	166(100.0)

(6)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처벌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대상 233개 업소 가운데 13개(5.6%)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노래방 10곳과 커피전문점 3곳으로 업주가 청소년인지에 대해 확인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여부

단위 : 사례수(%)

구분	오락실	노래방	커피전문점	PC방	인쇄매체업	편의점	계
판매한다		10(15.6)	3(6.4)				13(5.6)
판매하지 않는다	29(100.0)	54(84.4)	44(93.6)	48(100.0)	25(100.0)	20(100.0)	220(94.4)
계	29(100.0)	64(100.0)	47(100.0)	48(100.0)	25(100.0)	20(100.0)	233(100.0)

(7) 흡연실 유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흡연구역을 금연구역과 인접된 장소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PC방과 인쇄매체업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최소 한시간 이상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흡연실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흡연실이 있는 업소는 PC방 9곳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흡연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방의 경우 금연석과 흡연석을 구분하기 위하여 1.3미터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한 업소도 있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1.3미터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7> 흡연실 유무

단위 : 사례수(%)

구분	PC방	인쇄매체업	계
있다	9(18.8)		9(12.3)
없다	39(81.2)	25(100.0)	64(87.7)
계	48(100.0)	25(100.0)	73(100.0)

(8) 청소년 흡연 묵인 여부

조사대상 140개 업소 가운데 청소년의 흡연을 묵인하고 있는 업소는 60개(42.9%) 업소, 청소년의 흡연을 제재하는 업소는 80개(57.1%) 업소로 청소년의 흡연을 제재하는 업소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의 흡연을 묵인하는 업소의 수치도 유의미 하다고 본다. 특히 커피 전문점의 경우 33개(70.2%) 업소에서 청소년의 흡연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청소년 흡연 목인 여부

단위 : 사례수(%)

구분	오락실	노래방	커피전문점	계
목인한다	3(10.3)	24(37.5)	33(70.2)	60(42.9)
목인하지 않는다	26(89.7)	40(62.5)	14(29.8)	80(57.1)
계	29(100.0)	64(100.0)	47(100.0)	140(100.0)

2) 지역별 업소실태

(1) 인쇄매체업

청소년보호법 제 18조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 유해간행물 구분 및 격리 전시·진열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5개 업소 가운데 17개(68.0%) 업소는 구분 및 격리 전시·진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32.0%) 업소는 구분 및 격리하여 전시·진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청소년 유해 간행물 구분·격리 전시·진열

단위 : 사례수(%)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구분·격리 전시·진열한다	6(75.0)	5(71.4)	4(66.7)		2(66.7)	17(68.0)
구분·격리 전시·진열하지 않는다	2(25.0)	2(28.6)	2(33.3)	1(100.0)	1(33.3)	8(32.0)
계	8(100.0)	7(100.0)	6(100.0)	1(100.0)	3(100.0)	25(100.0)

(2) 비디오물 대여점

인쇄매체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비디오 대여점에서는 청소년 유해 비디오물의 경우 구분 및 격리하여 전시·진열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9개 업소 가운데 4개(44.5%)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5개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청소년 유해 비디오물 구분·격리 전시·진열

단위 : 사례수(%)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구분·격리 전시·진열한다		3(60.0)	1(100.0)			4(44.5)
구분·격리 전시·진열하지 않는다	2(100.0)	2(40.0)			1(100.0)	5(55.5)
계	2(100.0)	5(100.0)	1(100.0)		1(100.0)	9(100.0)

(3) 오락실

사행성, 음란성 오락기 설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9개 업소 가운데 8개(27.6%) 업소에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개(72.4%) 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성, 음란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영등포구 4곳, 신길3동 1곳, 천호동 3곳으로 나타났다.

<표11> 사행성·음란성 오락기 설치 여부

단위 : 사례수(%)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설치되어있다	4(25.0)		1(25.0)		3(75.0)	8(27.6)
설치하지 않았다	12(75.0)	4(100.0)	3(75.0)	1(100.0)	1(25.0)	21(72.4)
계	16(100.0)	4(100.0)	4(100.0)	1(100.0)	4(100.0)	29(100.0)

(4) 노래방

노래방의 경우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연소자실을 마련한 업소는 오후 10시 이전까지 제한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64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노래방을 조사한 결과 투명유리가 제대로 갖추어진 연소자실이 있는 업소가 25곳(39.1%),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업소가 39곳(60.9%)으로 연소자실 시선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한 업소는 전체 64개 업소 가운데 37개(68.0%)업소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 27곳(32.0%) 보다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과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 출입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업소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오후 10시 이전에 상영되고 있는 뮤직비디오 내용의 선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4개 업소 가운데 45곳(70.3%)은 건전한 뮤직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곳(29.7%)은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영하고 있는 뮤직 비디오는 주로 노출이 심하고 선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어 성인이 보기에 불건전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2-1> 연소자실 시설 상태

단위 : 사례수(%)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양호	7(28.0)	5(55.6)	1(14.3)	4(30.8)	8(80.0)	25(39.1)
불량	18(72.0)	4(44.4)	6(85.7)	9(69.2)	2(20.0)	39(60.9)
계	25(100.0)	9(100.0)	7(100.0)	13(100.0)	10(100.0)	64(100.0)

<표12-2>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단위 : 사례수(%)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부착하고 있다	16(64.0)	5(55.6)	2(28.6)	9(69.2)	5(50.0)	37(68.0)
부착하지 않고 있다	9(36.0)	4(44.4)	5(71.4)	4(30.8)	5(50.0)	27(32.0)
계	25(100.0)	9(100.0)	7(100.0)	13(100.0)	10(100.0)	64(100.0)

<표12-3> 뮤직비디오 내용의 선정성 여부

단위 : 사례수(%)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선정적이다	12(48.0)				7(70.0)	19(29.7)
선정적이지 않다	13(52.0)	9(100.0)	7(100.0)	13(100.0)	3(30.0)	45(70.3)
계	25(100.0)	9(100.0)	7(100.0)	13(100.0)	10(100.0)	64(100.0)

(5) PC방

조사대상 48개 업소 가운데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9개(18.8%) 업소, 흡연실이 없는 업소는 39개(81.2%) 업소로 흡연실이 없는 업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에서 지난 9월 PC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PC방의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이 환기라고 응답한 학생이 4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실 설치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해매체 방지프로그램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치되어 있는 업소 38곳(79.2%),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 10곳(20.8%)으로 설치되어 있는 업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길 1동에 위치한 PC방을 제외한 영등포구,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에 위치한 PC방에는 유해매체물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1> 흡연실 유무

단위 : 사례수(%)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있다	3(15.0)	1(10.0)	2(22.2)	1(33.3)	2(33.3)	9(18.8)
없다	17(85.0)	9(90.0)	7(77.8)	2(66.7)	4(66.7)	39(81.2)
계	20(100.0)	10(100.0)	9(100.0)	3(100.0)	6(100.0)	48(100)

<표13-2> 유해매체 방지 프로그램

단위 : 사례수(%)

구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3동	화곡동	천호동	계
설치되어있다	20(100.0)		9(100.0)	3(100.0)	6(100.0)	38(79.2)
설치되어있지 않다		10(100.0)				10(20.8)
계	20(100.0)	10(100.0)	9(100.0)	3(100.0)	6(100.0)	48(100.0)

7. 결론

1980년을 기점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을 나쁜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지키고자 각계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지정·관리하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개정 청소년 보호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의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고,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운영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본회는 1999년 10월 이후부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감시활동을 전개하면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설정과 이미 설정된 지역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청소년 출입시간대가 제한되어 있는 노래방 3곳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방 10곳과 커피 전문점 3곳에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최소 1시간 이상 머무르는 PC방과 인쇄매체 업소의 경우 조사대상 73개 업소 가운데 PC방 9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연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40개 업소 가운데 흡연을 묵인하는 업소는 60개 업소로 이 가운데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많이 청소년의 흡연을 묵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은 인천화재사건 이후 소방당국의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비교적 소방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나 비상구의 경우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관계당국의 단속 및 순찰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근지역의 청소년 출입업소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지경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비밀비재하며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지도 희박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있듯이 별도의 흡연석 또는 흡연실 설치와 청소년 출입업소의 시설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에서 육성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유해환경의 증가와 확대에 의한 피해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실행력이 따라준다면 현재처럼 청소년을 악용하는 상흔이 기승을 부리고 이에 희생되는 청소년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정, 학교, 시민단체, 정부는 함께 힘을 모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와 청소년 문화

김 찬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 지역과 단절된 청소년의 생활 세계

'월(越)담'이라는 말이 있다. 담을 넘는다는 뜻인데, 이는 아직 국어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은어 비슷한 낱말이다. 이 말이 언제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의 머리에 이 명사가 입력되는 것은 대개 중학교 무렵이 아닐까 짐작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일단 등교하면 하교시간이 될 때까지 학교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문에는 수위 아저씨가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문제아'들에게 그러한 통제 장치는 별로 효험이 없다. 담을 타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점심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군것질을 하기도 하고 전자 오락실이나 만화가게 같은데 들르기도 한다. 그렇게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처박혀 있다가 그냥 '땡땡이'로 이어지기가 일쑤이다.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놀이까지도 학교 공간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 일과가 끝나기 전에 그 공간을 벗어나면 곧 일탈이 되는 것이 지금 제도 교육이다. 그렇다. 근대교육은 청소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데서 출발했다. 산업화 속에서 생산 중심으로 삶이 재편성되면서 사회는 거대한 공적 영역과 왜소한 사적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왔다. 그리고 학교는 공장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훈련시켜 제공하는 기능을 떠맡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활동은 지역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별도의 공간에서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의 모든 요소들을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분리하여 한데로 집결시켜 독점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지역사회가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은 학생들에게 위험한 곳이다. 이런저런 유혹의 손길들이 청소년들을 노리는 음침한 장소이다. 또는 정반대로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외출을 단속하는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무슨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잠재적 범죄집단인 양 여겨진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수상쩍은 눈길을 보낸다. 지역이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공간이고,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에게 위험한 존재인 현실, 그 어느 경우이든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근대 이전의 모든 사회에서 아이들은 가족에 소속하면서 동시에 지역에 소속해 있었다. 그래서 자기 부모만이 아니라 동네의 모

든 어른들이 부모처럼 훈육하였고, 그러한 관계를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부모 - 자녀 관계가 가족 단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안에 거주하고 있는 '어른들 일반'과 '아이들 일반' 사이에 성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관념은 우리처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진 사회에서는 사실 그다지 낯설지 않다.

물론 전통 사회적인 정서를 낭만적으로 미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개인 내지 가족의 영역들이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한 측면도 적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전근대적 관념과 습속이 현대사회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되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상당히 많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대의 도시화된 사회에서 지역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간다는 점이다.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는 주체는 가족과 국가(국가의 대리자로서의 학교) 둘 뿐이고, 아이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또래 집단과 대중매체 둘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 문화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상충하는 면이 많다.

지역사회는 그러한 교육과 문화 어느 차원에서도 별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이 교육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교육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학교는 지역과는 관계없이 성립한다. 또한 아이들이 방과후에 친구들과끼리 어울려 지역의 이곳 저곳을 쏘다닌다면 청소년 문화의 측면에서 지역은 유의미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어떤 집단적 행위를 담는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아내는 독특한 문화적 분위기가 청소년들의 생활 세계에 배어들고, 다시 청소년들의 하위문화(sub-culture)가 그러한 분위기를 유기적인 일부분을 구성해가는 상호 삼투작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2. 문화를 생산하는 청소년 공간을 위하여

그런데 달리 보면 현대 도시에서 청소년들의 공간은 점점 확장되어 가는 듯하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점점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구매력을 겨냥한 것으로,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리고 지역 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청소년 공간이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입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것과도 밀접히 맞물려 있다. 동네마다 크게 들어서는 입시 학원과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수송하는 셔틀버스가 바쁘게 다니는 풍경 이외에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 지난 몇 해 사이에 급속하게 확장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은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다. 어쩌면 물리적으로 열악한 공간 사정과 맞물려 가상 공간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이런저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지역 공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수록 청소년 공간은 더욱 필요해진다. 지금의 상황에서 청소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몸과 몸, 몸과 물리적 공간이 부딪히는 신체성(身體性)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은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을 획득하고 삶의 리얼리티를 체험할 수 있다. 사실 댄스 가요의 열풍이나 헤어스타일 등 패션의 다양화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 문화는 특히 최근에 들어 점점 더 신체를 매개로 형성되는 면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의 경우 대량 복제되어 전달되는 영상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동일시하거나 소비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직접 타자와 상호작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를 표현하는 기회는 매우 희박한 것이다. 지역의 청소년 문화 공간은 그러한 자기 발견과 사회적 소통의 장(場)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처럼 청소년의 성(性)문화가 심각한 병리현상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사회성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곧 인격의 각성이면서, 자기 존중(self-esteem)의 기반이 된다.

그러한 체험은 교육의 차원에서도 깊은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키워내는데 점점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가 단순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나 대처 방식이 뚜렷한 몇 가지 유형으로 매뉴얼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다. 표준화된 코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안목이다.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유용한 것을 선별하여 조합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창발력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현실과 단절된 채 추상적 기호들만을 입력시키는 기존 교육의 한계는 자명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리얼리티에 대한 감수성과 통찰력이다. 그러한 능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양된다.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들은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가족이라는 제한된 소유주, 또래들과의 상부적이고 피상적인 교제, 학교 교육의 평면적인 데이터, 선정적인 대중문화,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펼쳐지는 가상 현실 등이다.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은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다. 청소년기는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교육은 그것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비좁은 인간관계에 매몰되어 있고, 다른 한편 너무나 광활하고 관념적인 기호 공간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 둘 사이를 매

개해 줄 수 있는 유의미하면서 리얼한 세계가 필요하다. 감각과 의식 양면으로 통해서 해독 가능하면서 그것을 통해 현실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접점들이 입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공간의 위상은 바로 거기에 있다.

3. 청소년 공간의 구성 방향

지역사회에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청소년들이 그 디자인의 공동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개의 경우 공간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은 행정이나 전문가들의 몫으로 독점되어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청소년들의 생활 세계나 정서적 욕구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라고 볼 때, 그것은 몇몇 형식화된 서베이나 제한된 현장 조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담아낼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발의하도록 소통의 회로를 열어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디자인 기초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현실의 일부를 만들어 가는 성인으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설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적 기억과 사연들이 담기는 고유한 장소(場所)가 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묻어 들어간 그 공간에 아무래도 더욱 애정을 가질 것이고, 그만큼 그 유지 비용도 자연스럽게 절감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공간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공간을 개조한다고 할 때, 그 설계 기간을 충분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의 과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로 매우 중요한 활동이고,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관리의 공동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것,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규약을 세우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등 시스템 전반의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 '자율' 또는 '자치',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책임 의식을 스스로 체득해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이 언제까지나 보호나 선도 또는 감시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행착오를 각오하고서라도 그들에게 사회적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공간은 청소년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일 필요가 없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현대 공간의 한 가지 중요한 경향이 복합화(複合化)라고 볼 때, 시간대에

따라서 노인이나, 주부 또는 어린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여차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대 도시에서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대단히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나눠서 청소년, 노인, 주부 등이 이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서 운영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그 프로그램까지도 설계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목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안목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세대를 넘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4. 학습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보통 청소년 공간은 주로 특정한 시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렇게 시야를 한정시키다보면 자칫 한편으로는 청소년 시설 안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려는 무리한 욕심을 낳기 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외의 공간을 소홀히 여기기 쉽다. 이제는 지역 사회 전체가 청소년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역이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문화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역이 다시금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서 변모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을 헐어야 한다. 그 한가지 전략으로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학교 교육의 소프트웨어로 끌어들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교육의 소프트웨어로 될 수 있는가?

'동네에서 세계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 안에는 세상사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 집약된 연관성과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물과 존재들을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제과점을 들어보자. 그 안에는 농업과 유통, 생물학과 화학, 경영과 디자인 등 여러 전문 영역들이 얽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제과점 주인은 적어도 빵에 관련된 그 모든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 살아있는 지식은 흥미로운 교과목으로 각색될 수 있다. 제과점은 하나의 멋진 교실로 바뀌고 주인은 훌륭한 교사로 변신할 수 있다.

제과점뿐이겠는가. 문방구점, 음식점, 은행, 병원, 소방서, 파출소, 구청..... 동네 안에 있는 모든 '일터'는 '배움터'가 될 수 있다. 지역 경제와 금융 시스템, 보건과 복지, 도시 시설물과 재해, 행정 체계 등 세계의 제반 열개 및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인 것이다. 그것을 학습의 텍스트로 인지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지역 및 대상들에 대해서 지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할 것이다. 그 관심이 축적되고 발전하여 환경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물론 매일의 돈벌이나 반복적 업무에 파묻혀 살아가는 직업인들 가운데 자기의 일을 그러한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단한 공부가 요구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는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성인 교육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단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정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나 삶의 체험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반추하는 성찰의 계기가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들이 문화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를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장(場)으로 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이다. 학교의 특별활동의 성과가 지역 축제를 통해 보여지고,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제작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의 소비자로서만 규정되어온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역문화의 생산자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 즉 사회로부터 승인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한 인간적 관심의 상호 그물망 속에서 청소년과 어른들은 새로운 타인과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의 생활 세계를 보면 집과 사회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다. 집과 학교를 떠나서는 청소년들의 생활 공간이 없다. 그러나 지역은 청소년들에게 점점 중요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그 곳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문제는 그 문화에 대한 어른들의 관여 방식이 고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도덕률 아니면 무분별하고 근시안적인 상업주의밖에 없다는데 있다. 그 두 질곡을 넘어서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만나 공동의 생활 세계를 형성해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가족적 이기주의를 연료 삼아 무작정 달아오르기만 했던 교육열의 에너지를 조금씩 풀어헤치면서 바깥으로 나아가자.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의 원초적인 의미를 헤아리면서 지역을 인간 성장의 터전, 생명의 마당으로 열어가자.

바람직한 청소년 대안환경

이 민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청소년과 유해환경

'유해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유해한'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육자들과 업주들의 유해환경 여부에 대한 논란은 바로 이러한 '유해'에 대한 해석과 적용범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론적으로 볼 때 악물, 폭력, 안전 미비 시설 등과 같은 소위 '절대적 유해환경'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만, '상대적 유해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선정성이나 폭력성과 관련된 유해매체물이나 업소 등에 대한 판단은 판단의 주제나 판단기준, 청소년 연령과 개인별 성숙도,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적 풍토와 가치관과 같은 상대적 수용성에 따라 유해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유해업소 관련 사례

지난 2000년 8월 23일 일산 신도시 대화동 주민 151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고양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訴)를 제기했다. 이는 쾌적한 전원도시를 자랑하던 일산에 소위 '러브호텔'이라 할 수 있는 모텔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주민들이 자녀 교육과 부동산 시세 하락을 염려하여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고양시교육청」에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근거로 학교주변에 모텔이 들어서는 대도 학교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를 볼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각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활동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유해업소 실태 및 관련 법·제도 현황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학교주변 일정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하여 이 구역 내에서의 유해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아래의 <표-1>에서 볼 수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표-1>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각호, 농법시행령 제4조의2

범 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호텔/여관/여인숙	×	○	×	○	
당구장	○	○	—	—	현재결정(97.3.27) 반영
사행행위장/경마장	×	○	×	○	95년말한 정비
게임제공업소	×	○	—	—	전용, 멀티, 종합게임장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	×	○	
만화가게	×	○	—	—	
무도학원/무도장	×	○	×	○	
노래연습장	×	○	—	—	
담배자동판매기	×	○	—	—	98년말한 정비
비디오물감상실	×	○	—	—	
전화방	×	×	×	×	
성기구취급업소	×	×	×	×	2002년말한 정비

자료 :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정책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98. 1. 16)하여 비디오물감상실 및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등 신종풍속업소 설치를 제한하고,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의 개정('98. 12. 31)으로 벌칙을 강화하여 정화구역에 금지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 중 벌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표-2>는 교육부가 지난 1998년까지 정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통계인데, 통계와 달리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의 보고에 따른 학교주변 유해업소 실상은 현재 전국 2만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4만 5천여 업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업소는 학교보건법 상 금지시설로 규정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존시설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해제된 업소들인데, 이렇게 학교로부터 불과 200m이내에도 많은 수의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실적(1998년)】

<표-2> (단위: 개소)

구 분	유흥주점	숙박업소	당구장	컴퓨터게임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기타	계
당초업소수	58	351	82	3,279	1,267	693	655	69	6,500
'97년까지 정비누계	39	180	69	2,443	1,267	155	649	40	4,885
'98년도 정비실적	7	8	1	87	-	86	2	6	197
잔여업소수	12	163	12	749	0	452	4	23	1,418

자료 : 교육부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해업소를 총 망라하여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부의 「학교보건법」이 정한 유해업종 이외에 이용업, 사우나탕업, 컴퓨터게임장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 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소위원회정책연구보고서(1998)>에서 제시한 <표-3>에 따르면 학교주변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쉽게 모여드는 도시 중심부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휴게음식점과 전자오락실 등을 제외하고도 전국에 54만여 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80%나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업종별 업소수 및 분포율(1998.8.31기준)】

<표-3> (단위: 개소)

업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만화대여점	이용업	숙박업	특수목욕탕	계
업소수	390,734	17,331	24,978	82	3,279	1,267	693	655	69	540,299
분포율	80%			7%			13%			100%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업소 관련 문제점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세부적으로 나열해보면, 먼저 교육부에서는 IMF 관리체제 이후의 완화되어 가는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유해업소들의 학교주변 설치 증가, 관계법 이전에 설치된 업소들의 폐쇄 및 이전의 법 적용 어려움, 정화구역 설정권을 가진 교육장과 철거권을 가진

관계행정청과의 갈등, 「금지결정」을 받은 업주와 시설주인들의 심한 반발, 심의의 공정성·형평성을 둘러싼 특혜 의혹, 관련업계의 당구장·컴퓨터게임장·멀티게임장(PC방)·만화가게 및 노래연습장 등의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규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 주장, 절대정화구역 확대와 상대정화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제도 폐지 주장, 유치원 및 대학의 정화구역 설정대상 제외 등이 문제의 쟁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주로 「청소년보호법」의 제24조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과 제2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과 관련된 문제로 교육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과는 상관없이 도시 전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무분별한 확산,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법체계 미흡으로 효율적 단속과 통제의 어려움, 유해업소의 출입 용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미흡, 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에 대한 강도 높은 관계법 개정과 투명한 법 적용 부재,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말해지고 있다.

결국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크게 요약해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의 대표적 유해업소들이 학교 주변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난립해 있고, 점차 그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과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하고, 그나마 미흡한 법·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업소 업주들은 현행제도는 지나친 규제이므로 대폭 완화하여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테마로서,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과 문화창조성을 저해하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문화계 일각의 주장들이 있었다. '대안(代案)'이란 말은 원래 '양자택일'이거나 '여러 다른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 유해환경의 상황을 볼 때 유해업소 업주들이나 문화계의 주장을 놓고 양자택일을 하는 일은 대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K. Lewin의 '장(場)의 이론'(field theory)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U.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학적 이론을 종합해 볼 때, '유해환경'이란 이러한 서로 다른 상대적 주장들을 뛰어 넘어 인간의 정신과 신체, 정서, 도덕, 행동양식 등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표적인 유해환경으로서의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문제 해결의 대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가능성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거시적·장기적 대안 모색

첫째, 우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빼놓을 수 없는 말이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교육환경이 문제 청소년들을 산출해 내고 있는 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환경을 개혁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먼저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관련 정책자들의 결단과 의지이다. 즉, 우리 사회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의 연결고리인 학연(學緣)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명문대 출신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줄 세우기 식 대학입시제도를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형태로 평준화하여, 대학에서는 교양과 전공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철저히 배우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경쟁력은 성인이 된 대학졸업 후 자신의 진로결정으로 상급제도에 의해 소수가 양성됨으로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 즉,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내에서는 21세기 지식화·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학교 밖의 가정, 자연, 사회 속에서는 知·德·體가 조화된 인성(人性) 교육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체를 형성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즉,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깊이 생각하여 교육에서도 국민이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권한과 책임행사를 하여야 한다. 촛지(寸志)를 주고받지 말고, 건전한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잘못된 정부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과감히 비판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선거나 기타 언론 등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주체적으로 투쟁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건전한 성인문화와 청소년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접하는 유해환경은 대부분 불건전한 성인문화로부터다. 선진국과 같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의 공급과 수요에 따른 문화향수가 없기 때문에 성인문화를 모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문화는 향수(享受)해본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보전하게 되어 있다. 문화가 본질이라면 사회는 그의 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996년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로 구상했던 문화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건전한 성인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부문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을 위한 자연권·생활권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가정환경 개선, 문화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구촌 세계시민으로의 성숙을 위한 민주적 참여문화의 형성이다. 그 동안 우리의 사회와 문화는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왔다. 그 결과는 정경유착의 부패에 의한 경제의 IMF관리체제, 심한 경쟁사회에서의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전통적 미풍양속과 예(禮)와 덕(德)의 상실, 온갖 쾌락적이고 폭력적인 유해 퇴폐문

화의 범람 등등이다. 우리의 OECD 가입은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 문화가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많은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옥석(玉石)을 가려내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88~2002)의 패러다임도 청소년들의 자율·참여·인권으로 그 중심이 변화되었다.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다양한 세계 NGO들과의 연대와 참여활동 체험들을 통해 지구촌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거듭 성숙해지는 인간형성 과정이 필요하다.

■ 미시적·단기적 대안 모색

첫째,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업소 구역을 지정하여 집중화하여야 한다. 지난 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차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늦게나마 문제의 핵심을 다루게 된 것이 다행이다. 선진 외국들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인업소를 도시의 특정지역에 집중시켜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출입과 고용이 쉽게 통제되고 있다. 즉, 신규업소는 집중화지역에만 허가하고 기존업소는 인센티브 부여로 집중화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 및 조항을 신설하고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한 후 점차 확대 적용 한다.

둘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일본의 풍속법에서는 상대정화구역을 2km로 하고 있고 독일 아테인 현장 37장을 보면 계획된 녹지대, 유치원, 학교,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공공건물 등을 인접 배치하고, 학교는 도시개발계획상 최우선적으로 취급되어 혼잡한 도로와 떨어진 장소에 주거지역과 공공건축물 사이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해업소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 많고 뒷거래가 오갈 수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절대정화구역만을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도 우리 현실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해환경이나 유해업소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과 처벌의 강화이다. 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대책이고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가장 긴급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 매매춘과 관련된 경우 벌금형 없이 최고 10년까지 징역의 실형을 살게 하고,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많은 벌금을 물리도록 해서 커다란 실효를 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강화는 그 좋은 예이다. 한편,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의 위생 및 보건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독일의 예처럼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을 보완하여 간접적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가칭 "교육환경보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시민단체 및 자발적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치단체 단위 청소년위원회의 유해환경 관련법 적용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의 훈련 및 교육과정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나 정부로부터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열거한 대안들을 실천토록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급적이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활동하는데 자유스럽고 효과가 높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정책 및 청소년육성정책을 우선 순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시급한 교육정책적 개선과제는 보충수업 폐지에 따른 특별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도교사 확보·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실업계 고등교육 강화로 취업 기회 및 고용안정의 확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직업훈련 강화, 유해업소 출입 학생의 학교상담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고, 청소년육성 및 보호 정책적 과제로는 청소년 욕구에 따른 학교 밖의 전문화·특성화된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과 프로그램들의 확충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폭 늘려주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강화, 가정의 부모교육프로그램 보급의 전국적 확대,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관한 공공 및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홍보 강화, 유해업소에 대한 주민신고제 강화 및 신고 유인책 도입, 모범업소 운영자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부여, 결손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대리보호제도,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의 활성화와 직업교육과의 연계,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대책, 음란성과 폭력성 관련 언론매체와 PC 및 internet 선도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다

남 효 (전교조 학생생활국 학생사업부장)

1. 글머리

시골마을에서 자라나고 단순한 동선 구조 속에서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나에게 도시는 무척 낯선 곳이다. 땅이 없어도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사는 곳이고, 김치나 나물이 나오는 곳이다.(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질문에 어린이들은 '공장'이라고 얘길한다. 그 얘기를 처음 들던 때의 충격이란! 그러나 도시에서 내가 살면서 아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감탄스럽게 깨달았다.) 그리고 도시에는 따로 '공장'이 눈에 띄게 많지도 않다. 대부분이 '상점(시장)', '사무실'이고 그런 것들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로 분류되기에는 아직은 '필수품'이라는 명목이 갖는 한정적인 의미가 완고하다.(아직도 우리 사회에 '가난'의 그들은 어둡고 무겁다. 물론 '필수품' 속에 '귀거리'나 '의류'등을 꼽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는 하지만, 생존 위협으로부터 한결 가벼워진 시대이긴 하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상점' 등에서 소비품을 거래하며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들에 있어 사실, 농촌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들이 참 어색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굳이 '도시'를 글머리에서 끌어낸 것은 '도시적 삶'이 곧 지금 우리 사회의 '보편적 삶'으로 이해되고 있고(심지어 농촌도 이와 유사한 삶을 살고 있거나 모방하거나 지향하고 있다.) 이런 '도시적 삶'이 우리가 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가장 직설적이다 못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안전지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대 이후 '청소년'시기는 유예시기로 특별하게 보장(호)된 시기였다. 굳이 '현실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일상으로 품고 살아가도 되는 시기, 온갖 사회적 의무로부터 거리를 두고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 학교라는 공적 제도가 형성이 되고 의무교육의 이념이 유포되면서 미흡하지만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막론하고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애초 '경쟁'과 '배제(선택을 통해서 열등아를 만들고 낙오자를 만들어야 하는)'를 통해서 '이윤'을 얻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체제이다(거꾸로 '이윤'을 얻기 위해 '경쟁'과 '배제' 기제를 택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는 유예기로서 '청소년'기는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자본주의는 점점 '청소년'의 특성을 한정시키기 시작했다. '유예기'이므로 의무 뿐 아니라 '권리'까지도 유예해야 하는 시기. 이유는 정서적 지적 미성숙아이며 합리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자본주의적' 학문적 뒷받침이 교묘하게 제공되었다.

2. 환경이란

우리가 처한 환경은 물리적인 공간과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공간을 동시에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은 학교나 교회나 문화센터 같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건물을 포함하여 도로, 차 등의 공간을 채우는 갖가지 요소들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징적 의미의 공간은 존재성과 관계성을 형성하고 조건지을 수 있는 것들로, 안전(평온)한가, 민주적인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각종 제도, 규칙에서부터 인간관계까지를 포함한 것들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가, 혹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은 곧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가(물리적 의미), 도시(공간=환경)가 디자인되고 계획되는 과정에서 또 어른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도시가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환영받는 존재이며 도시에서 '어른과 동등한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상징적 의미)이다. 이에 답해보자.

청소년(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다.

☞ 왜 그러한가

1. 대체로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놀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이 가지는 점진적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이들 사이에 적성, 활동성, 책임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따라 어린이들을 '차별화'하지 않는다.¹⁾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어른이 되기 위한 유예시기이기에, 그리고 '어른'이라 함은 특정한 연령 수준을 넘어, 적당한 수준의 지적, 경제적 수준을 갖추면 되는 존재이기에, 어린이는 어른이 되기 위해 지적 수준을 쌓아가고, 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한 무수한 '평가제

1) 새천년 건축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어린이와 환경·안전'에서 발제된 Arza Churchman 교수의 '도시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있는가', 2000.11월(아래 1)~5). 모두 포함)

도'를 거쳐서 살아남으면 된다. 어린이일 때 경험하는 온갖 것들 중에 어른으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시가 된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말뚝박기를 하면서 노는 것보다 피아노 학원이나 국영수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어른되기'에 더 적합하다. 그리고, '어린이'는 어린이로 단순하게 획일화되어 있을 뿐, 10살의 어린이와 11살의 어린이가 어떤 경험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차이를 갖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을 위한 온갖 제도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면 '어린이가 누구인지'를 '차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어른들은 환경 중의 어떤 요소가 어린이들에게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유년기 및 청소년기는 '지나가는 단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 때문이다.
4. 어린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5. 아마도 어린이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서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환경'은 아이들에게 유해하다.

☞ 가정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부모'라는 환경은 물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아이들은 비민주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억압당하고 있다. 부모의 대리총족자로부터 부모의 계급재생산의 대상으로까지, 부모(가족)의 사랑은 한없이 너그럽고 안락하지만 때론 '폭력적'이기도 한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 도로(거리)

대기오염과 유해환경이 집중 배치되는 곳.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가장 '바라보기'를 잘 할 수 있는 곳.

1. 대기오염이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²⁾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숨을 자주 쉬기 때문에 몸무게 단위 당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들이마신다.
2. 어린이들은 대개 어른에 비해 육체적으로 활발하다.
3. 남을 비롯한 많은 오염물질들은 무겁고 지면 가까이 내려앉는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오염물질에 더 가까이 있게 된다.
4. 노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오염물질이 배어있는 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
5. 어린이들은 입으로 숨을 쉬기 쉬워서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기가 어렵다.
6. 태아와 유아의 육체조건은 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노출이 해로운 결과로 이어지기가 더 쉽게 되어 있다.

'불확실한' 위험(자동차 사고, 유해환경, 폭력 등)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 해방의 공간

☞ 학교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을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2) 새천년 건축환경디자인 세계대회 '어린이와 환경·안전'에서 발제된 Arza Churchman 교수의 '도시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있는가' (2000년 11월.1)~6)까지.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은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인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엔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여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젠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봐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이하 줄임)

획일화된 공간과 획일적인(수직적인) 위계질서(교사들의 위계질서,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질서) 획일적인 수업내용, 획일적인 인생경로, 획일적인 꿈들을 '네모'를 통해 '둥글게' 비판하고 있는 노래이다. 아이들은 획일적인 공간에서 탈출을 꿈꾼다. 청소년 시기는 분명 지적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저항적이고 비판적이며 '일탈(부정적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인류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일탈적'인 후세대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탈'과 '저항'이 단지 '나'의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고 '너'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은 결코 '어린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탈출하고자 한다. 각종 억압과 통제로 무장한 가정과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을 약속이라도 한 듯이 거리로 내몰고 있다.

거리로 나온 아이들은?

3. 인천화재참사

거리로 나온 아이들은 때로 용감하게 술집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분식집이나 한결 양호한 커피숍으로 간다. 그런데 거리가 양호하다면야 문제는 없겠지만.

가장 잘되는 장사가 곧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이다. 어른들에게(앞에서 언급했듯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과자를 만들어 파는 가게 뿐 아니라 아이들의 입맛을 보다 자극적으로 자극할 맛을 개발하는 제과회사의 개발팀과 공장에서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과 유통에 종사하고, 그것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 '아이들'은 가능성 있는 훌륭한 '소비자'이다.

<LIVE 2>호프집은 비록 호프집이긴 하지만 이미 그곳이 '발전된' 분식집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특히 그 부근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호프집답게 어두침침하기도 하고 때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생일파티를 할 때 간혹 맥주를 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 곳. 그러나 아이들에게 '유혹'을 즐길 만큼 주머니가 충분하지는 않다. 대부분 아이들은 담배피우는 아이를 힐책하거나 혹은 선망하거나 혹은 동참하며 '떡볶기'나 '라면'을 먹고 수다를 떨고 있다. 어떻게 호프집이 그런 '변태영업'을 할 수 있었는가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서울에는 있다는 '하자센터'나 '미지센터'(물론 서울에도 그 공간은 자체가 작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도 않다) 등이 '인천'에는 없었다. 한 곳도.

물론, 내일 청소년 생활문화마당 같은 청소년 자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중앙 지방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흡하다.

상업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때로 아주 교묘하게 기획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몇 몇 거대한 복합소비센터(백화점을 비롯해서, 거대 소비센터)는 매일 혹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문화마당을 개설한다. 댄스, 랩 등 청소년들이 경도해 있는 '영역'을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끼를 맘껏 펼치십시오. **야나 무대는 여러분들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TV스타들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듯한 아이들은 **야나에서 제공한 훌륭한 소품을 입고서 그 소품을 홍보해주면서 그들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나마도 행복해하고 있다. 상업자본주의의 선전물품으로 위장된 자기 모습은 조금 씩씩할지언정. 그래도 행복하다(그러나 보는 어른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다'는 (어른들의) 절규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하다. 그러다, '공부'나 '대학'이나 '시험'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만나면 그런 (어른들의) 절규는 아주 비겁해지고 만다.

3. 新 孟母三遷之教

우리 아이만은, 우리 가족만은, 우리 학급만은, 우리 학년만은, 우리 학교만은 이런 '상업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또 대학을 가야 하고 쏟아지는 정보를 수용하지 못하면 도태될 텐데...

해결책은, '온실 속에 가두어라'이다. 시장을 피해, 장의가(葬儀街)를 피해 서당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물론 그런 곳은 있다. '강남'이라는 곳. 여기서 강남은 단지 '지역적' 의미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않는다. 차별적으로 특별히 고상한 행동양식과 문화양식을 계승하며 '돈'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나라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곳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부모들)은 여기저기 뛰어봤자 '서당'이 더 이상 도시에 없다는 것을 힘들이지 않고서 알 수 있고, 부모들의 선택은 단 하나로 귀결된다. '온실 속으로!'

통행 금지 구역과 시간을 만들고, 청소년 보호(=격리) 지구를 만들고 '어른들'은 할 수 있는데 반해(물론 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규율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기에 범접할 수 없는 여러 놀이들이 있고.

그러나, 영원히 '분리'하거나 '격리'해야 할 것인가. 가장 유해하지 않은 곳을 찾아서 부모들은 '내 자식만큼은..' 그 애뜻한 사랑으로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를 단행한다.

4. 바라보자.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하게 청소년들이 권리를 찾고, 의무를 실천하며 책임을 배워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적합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먼저, 문화수용자교육(문화소비자교육이라고도 하자. 그 의미 해석은 무척 많이 달라지겠지만)을 하자. 소비자 교육을 비롯해서 문화를 어떤 주체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아이들 스스로도 그들 스스로 형성하고 있는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누가? 학교에서, 교사가, 지역사회에서, NGO단체가, 부모가.

둘째,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아이들에게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통념상 인정하고 있는 도덕적 규

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는 안되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레테의 강을 역으로 건너왔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즉, '아이들'을 다시 정의 내려보자.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셋째, '청소년 문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사회가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자치문화공간으로서 '문화의 집'이 활성화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지고, 구민회관이나 시청의 일부분 공간을 내어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학교 안에 아이들의 '자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밀학급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 속에서 교실 하나를 아이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방이나 자치활동실로 지원하라는 말이 너무나 배부른 소리인 것 같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욱 더 교육재정이 확보되어 아이들의 학교 안 문화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